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100359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62298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22 선고 2019가단100359 판결

전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강현구, 이용호

피고E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준

변론 종결 2019. 6. 20.

판결 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와 F 사이의 계약(이 사건 제1계약)

1) 원고 B은 2018. 1. 4. G와 사이에, G는 경남 합천군 H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그 토지와 태양광발전소 소유권을 원고 B에게 이전하고, 원고 B은 G에게 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G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8. 4. 2.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G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들과 F 사이의 계약(이 사건 제2계약)

1) 원고들은 2018. 1.경 G와 사이에, G는 경남 합천군 I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그 토지와 태양광발전소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원고들은 G에게 각 대금 210,000,000원(원고들 합계 8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G에게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F는 2018. 4. 2. 이 사건 제2계약에 기한 G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의 F에 대한 보증서 발급 등

1)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융자,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F는 2018.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과 관련한 계약보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F와 이 사건 제1, 2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F에게 원고들이 보증채권자로 기재된 각 계약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3) F는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계약보증서 사본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F의 이 사건 제1, 2계약 불이행 및 원고들의 해지통지

F는 이 사건 제1, 2계약의 공사완료기한인 2018. 11. 30.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11.부터 2018. 12.경 사이에 F에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F가 이 사건 제1, 2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F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F와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2018. 5. 9. F와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이 사건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보증서를 교부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 F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되었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들과 F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기로 정한 사실, 그럼에도 F가 피고에게 2018. 5. 9. 계약보증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제1, 2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계약보증이란 조합원1) 이 도급받는 공사 등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인데, 조합2)은 보증대상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3)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기로 정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F와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은 F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2019. 4. 11.경 F에게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 체결된 후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위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제3자라 함은 기망으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보증서를 토대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과 같이 계약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그 보증대상계약을 해지한 자는 위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4),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추가로 하고 있는 정지조건 미성취 주장,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원은 선급금으로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김윤석

1) 이 사건의 F이다.

2) 이 사건의 피고이다.

3) 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금원은 이 사건 각 계약보증서에서 지급을 보증한 금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에서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 제3자란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서의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을 뿐 원고들과 같이 보증서를 수령한 후 보증대상계약을 해지한 자를 제3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